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79
----------	-------

발의연월일 : 2023. 12. 7.

발 의 자 : 양향자 · 양정숙 · 최형두
정운천 · 구자근 · 김영식
노용호 · 김경만 · 최혜영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의 조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이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양화·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 법인이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후 그 비용을 지원받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

화단지 내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상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한 것으로 봄(안 제15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다.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라. 특화단지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특례) 전략기술 보유자가 제1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단지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략기술보유자가 특화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그 공장이 설립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5조의2(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특례)</u> <u>전략기술보유자가 제1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u>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u>포함한다</u>)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생략) ② ~ ⑤ (생략)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 ----- ----- ----- -----. 1. ----- ----- ----- ----- -----<u>포함한다. 이하 같다</u>-----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신 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2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단지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략기술보유자가 특화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공장이
설립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
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